

일본의 건축계를 알자

To know the Architectural World of Japan

김기철 / 본협회 법제위원회 담당이사
 이관영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by Kim Ki-cheol & Lee Kwan-Young

김기철, 본협회 국제위원

한민 /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국 초기 법제정과정에서 일본의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준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 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주로 JIA(신일본건축가협회)의 자료와, 건축가이자 평론가인 橋本喬行선생의 평론을 옮긴 것이다. <필자주>

일본건축가의 사회적·법적환경

1. 「Architect(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에 대하여

일본에는 「Architect(건축가)」와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사법」(1950년 제정)이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관한 업무독점과 「건축사」라는 칭호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법」은 설계 감리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한 법률이어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Architect-Law」와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다.

「건축사」라는 칭호는 건축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칭호일 뿐 「건축사(Architect)」라는 직업에 대한 칭호가 아니다.

일본에는 「Architect」와 관련한 법제가 없지만 그 밖의 마땅한 법제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사법이 「Architect-Law」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건축사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Architect(건축가)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예술적

역할과 직능윤리에 관한 사상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중에 적지 않은 수가 Profession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지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경과하여 그간 건축가의 Profession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다소나마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일본에는 일반적으로 「Architect」의 개념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건축사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을 행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를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 「목조건축사」의 3등급으로 나누어 당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감리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구조·규격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에 등급이 있는 것도 용도·구조·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0년 3월 현재 건축사로서 등록된 자의 총수는 74만명, 내용별로 보면 1급 건축사 22만4천명, 2급건축사 50만4천명, 목조건축사 1만2천명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중에는 사망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

「건축사」는 원래 건축의 설계 감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으로서 정해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즉 오히려 건축에 관련한 모든 기술자의 자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건축회사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각종 생산회사의 기술자, 교사로서의 기술자 등 여러 자격을 가진 자가 많다. 건축의 설계 감리를 행하는 자는 건축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정 이전에는 「Architect」의 번역어로 씌어 왔으나, 1950년의 건축사법 제정 이후 「건축사」란 호칭은 건축기술자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화하였으므로, JIA는 의도적으로 「건축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명(會名)에도 「Architect」를 의미하는 「건축가」의 칭호를 내걸어 건축가의 Profession의 확립을 목표로, Architect-Law의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Architect」의 칭호에 있어서는 법적 칭호인 「건축사」와 달리 어떠한 법적제약도 없기 때문에, 요사이 「Architect(건축가)」란 칭호를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2. 「Architect - Firm」에 관하여

「건축사법」안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조항이 있어,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직업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의 「사무소」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Architect-Firm」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건축사법」 중 「건축사사무소」 관련 규정에는 의뢰자에 대한 의무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직업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등에 관한 기술은 없고 또 건설업 등과의 겸업의 금지나, 법인 등과 같은 조직형태의 제한 등 사무소의 업무 형태에 대한 규정도 없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스스로 주재하는 경우 뿐 아니라, 누구라도 「건축사」를 고용하므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건설업, 개발업자, 상사 등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일본에는 건축가의 업태로 적합한 「Professional Cooperation(전문법인)」 등의 법인은 인정받지 못하며, 한편 「건축사사무소」가 일반 주식회사로 되는 것을 막는 법규도 없으므로 소규모 사무소는 개인으로, 대다수의 사무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는 건설회사가 설계부문을 병설하여, 「건축사」를 고용, 설계·시공을 동일한 회사조직내에서 하나의 계약아래 연속하여 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다만 건설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JIA에 가입하지 않는다.

JIA회원의 「Architect-Firm」과, 건설회사의 설계부문과 같은 2개의 업태는 누구의 눈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JIA의 주장이지만, 현재의 형편으로 구별없이 취급되고 있어, 원래 다른 2개의 업태에 맞는 각자에게 적절한 직업규제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축사법」에는 「건축사」 자격구분에 맞도록 각각 「1급건축사사무소」 「2급건축사사무소」 「목조건축사사무소」로 나누어져 있다.

3. 「건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험 자격은 「1급건축사」의 경우 대학에 있는 정규과정의 건축 혹은 토목에 관한 과정을 이수·졸업한 후, 2년이상의 건축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의 건축학과는 모두 공학부에 속해 있다. 「1급건축사」의 경우, 시험은 국가에 의하여 시행된다. 시험은 필기시험 뿐으로, 면접은 없다.

시험의 내용은 대부분 Engineering과 법규이고, 거기에 간단한 설계도의 작성이 추가된다. 현재 수험자

와 합격자의 비율은 12%정도로, 매년 6천5백명 정도가 합격 되고, 그중 98%가 등록하고 있다.

이 시험에는 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도 시험자 격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의 내용도 설계 감리업무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등, 「Architect(건축가)」의 자격취득 조건으로는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규 대학의 공학부출신이 아닌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해당 학교, 학과 등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일본의 건축관련단체

일본의 건축설계관련단체로는 신일본건축가 협회(JIA; 1914년 일본건축사회로 출발, 1987년 JIA로 새로이 발족, 회원수 약 7천명), 일본건축사회연합회(1900년 건축사법에 의거해 건축사회로 출발, 연합회는 1952년 설립, 회원수 약 13만9천명),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건축설계사무소의 임의가입단체, 연합회는 1975년 설립, 회원사무소 수 약 1만6천3백개), 건축업협회(BCS)설계부회 등의 4극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일본건축가협회는 일본에서의 건축 Profession의 제도확립을 주목표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의 단체로서 설립된 47도도부현(都道府縣)건축사회의 연합체이고,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는 건축사사무소단체로서 설립된 47도도부현의 건축사사무소협회의 연합회, 건설업협회설계부회는 건설업체안에 있는 설계부의 연락협의기관으로, 대외적으로는 건설업협회의 이름으로 대표된다.

여러 단체의 설립동기나 입장은 서로 달라서, 신일본건축가협회는 건축 Profession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까닭에 구미의 건축 Profession이 건설업 등 이해가 대립되는 업태에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설계를 전업으로 하는 자만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독립된 입장에 의의가 갈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태를 갖지 않음은 물론 그러한 업태에 속하여서도 안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건축설계의 전업자(設計專業)단체로서, 전전(戰前)의 건축설계선배들의 Profession 확립의 원망(願望)을 이어받은 유일한 단체이다.

여기에 반해 건축사회는 소화25년(1900년)에 제정된 건축사법에 의거 설립되었다. 건축사법이 전후의 부흥을 위한 건축설계기술자를 위한 법제였으므로 구미와 같은 건축 Profession의 윤리사상이 고려될 여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쟁전부터도 대규모 건설업체는 설계조직을 자체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당시 공무점(工務店)으로부터의 설계

시공 일관요구도 있어, 그 자격을 전업의 설계자뿐만이 아닌, 건설업에 속한 건축기술자에게도 주게 되었다. 그외에 건축행정 에 종사하는자,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 등 건축사자격은 전업의 건축사만이 아니라, 그외의 건축기술자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축사회는 이러한 모든 건축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40년을 경과한 오늘날 회원의 업무는 34%가 설계관계, 32%가 시공관리에 종사하는 등 거의 같은 비율의 건축사가 시공관리에 종사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법에 의하여 사무소나 현장의 기술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관리기사의 자격제도가 운용될 때까지는 건축사가 이일을 대신하였으므로 시공관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도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정해진 기능 이외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건축사법에는 설계 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 이법에 의거하여 개설된 건축사사무소를 회원으로 하는 것이 건축사사무소협회이다. 설계를 수행하는 자격이 전업의 건축사 뿐 아니라, 건설업에 속한 건축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는 전업건축사사무소만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개설한, 말하자면 겸업건축사사무소도 설계감리업무를 행하고 있다. 즉 건축사사무소협회는 전업, 겸업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사사무소의 단체이다.

건축업협회설계부회는 대형건설업단체인 건축업협회의 일부분인 설계부의 연락협의기관이다. 건설업안의 설계부문의 역사는 길어서, 전전부터 저명한 건축의 설계를 손대왔다. 오늘날처럼 수백~1천여에 가까운 대조직으로, 기획에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폭넓은 업무영역을 갖춘 대조직으로서, 일본의 건축설계계에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원동력이라면 전후 고도성장기의 사회적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건설업체의 필사적인 기업노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동일조직내에서 행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의 입장을 『이해의 충돌』로 보는 전업건축가측에서 보기에 건설업의 설계시공일관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업·겸업문제는 우열론을 위시하여 장기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따로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이외에 건축사의 단체는 아니지만 건축관련 단체로서 건축학회(AIJ)가 있다. 회원의 구성은 대개 대학 등의 교육 연구자가 22.5%,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자가 23.2%, 건설업에 속한 자가 25.6%로 이밖에도 공무원, 건축 관련 기술자, 제조회사의 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4단체중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수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설립1868년, 회원수 3만명(4단체중 가장 많은 회원이라 한 점으로 보아 30만명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 번역자 註)

이와같이 일본의 건축관련단체들은 각자의 설립배경과 업무범위가 다르고, 주의 주장 또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는 단체의 업무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격심한 오늘의 건축계에는 설계자로서 떠안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생산성의 문제는 시공자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만은 없다. Cost Control, Quality Control의 책임은 더더구나 설계자에게 있다. 건축설계자의 교육, 훈련도 지금 이대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일들은 개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나 관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설계자단체들이 협동하여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의 울타리가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각 단체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각단체 고유의 성격이 협동을 위한 발걸음을 오히려 묶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고유의 문제와 공통의 문제를 냉정하게 구별하여 대립점을 분명히 한다면, 협동 또한 실현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에는 건축가의 면허와 등록을 취급하는 건축가회의소가 각 주에 있고, 그 아래 건축가협회, 마이스터협회,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Landscape Architect 협회 등이 있어, 각자의 입장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은 건축가회의소에 상정하여 다루므로써, 개별단체들의 이해와 단체를 초월한 공통의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축설계문제는 개별적이기보다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 대처할 수 있는 독일의 제도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JIA와 AIA의 공동성명-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

1990년 8월 27일, 신일본건축가협회(JIA)와 미국건축가협회(AIA)가 직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건축가업무의 직능원칙을 승인하고, 직능적행동을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직

1. 건축사수

(1991년 3월 현재)

| 연 도 | 1 급 | 2 급 | 목 조 | 합 계 |
|------|---------|---------|--------|---------|
| 1980 | 152,017 | 407,203 | - | 559,220 |
| 1981 | 163,617 | 421,558 | - | 563,175 |
| 1982 | 174,425 | 435,308 | - | 609,805 |
| 1983 | 182,515 | 447,268 | - | 629,783 |
| 1984 | 190,091 | 458,951 | 6,355 | 655,397 |
| 1985 | 197,507 | 469,136 | 10,019 | 676,663 |
| 1986 | 204,462 | 478,644 | 11,137 | 694,245 |
| 1987 | 210,937 | 486,730 | 11,367 | 709,034 |
| 1988 | 217,609 | 496,244 | 11,499 | 725,352 |
| 1989 | 223,983 | 504,666 | 11,609 | 740,258 |
| 1990 | 230,672 | 512,931 | 11,688 | 755,291 |

주: 등록수는 2중등록과 사망자가 포함되어 실수와는 다를 수 있음.
1986년 3월 31일 현재의 추정실건축사수=466,000명 (등록수: 694,045)

2. 건축사사무소수

(1991년 3월 31일 현재)

| 연도 | 1급 | | | 2급 | | | 목조 | 합계 |
|------|--------|--------|--------|--------|--------|--------|-------|---------|
| | 개인 | 법인 | 계 | 개인 | 법인 | 계 | | |
| 1980 | 20,680 | 22,611 | 43,291 | 39,292 | 13,899 | 53,191 | - | 96,483 |
| 1981 | 22,420 | 24,135 | 46,555 | 38,814 | 13,767 | 52,581 | - | 99,136 |
| 1982 | 24,160 | 25,868 | 50,028 | 39,047 | 13,669 | 52,716 | - | 102,744 |
| 1983 | 25,769 | 27,428 | 53,251 | 38,219 | 13,805 | 52,024 | - | 105,275 |
| 1984 | 27,576 | 29,453 | 57,029 | 39,883 | 14,676 | 54,559 | 610 | 112,198 |
| 1985 | 29,542 | 31,381 | 60,923 | 41,508 | 15,191 | 56,699 | 1,157 | 118,779 |
| 1986 | 30,469 | 32,667 | 63,136 | 39,245 | 14,681 | 53,926 | 1,467 | 118,529 |
| 1987 | 31,387 | 34,564 | 65,951 | 36,957 | 14,586 | 51,543 | 1,624 | 119,136 |
| 1988 | 31,757 | 36,309 | 68,066 | 34,440 | 14,710 | 49,150 | 1,779 | 118,995 |
| 1989 | 32,501 | 38,958 | 71,459 | 34,461 | 15,316 | 49,777 | 1,676 | 122,912 |
| 1990 | 32,540 | 42,170 | 74,710 | 34,358 | 15,945 | 50,303 | 1,503 | 126,543 |

능적환경의 특이성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특이점으로서는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어떤 개인이라도 건축가라고 주장할 수있다.
- ② 직능법인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등록건축기술자(건축사)의 정의는 미국의 등록건축가의 정의와 다르다.

④ 어떤 사람이라도, 최소한 1인의 등록건축기술자(건축사)를 고용하면 직능적 건축사무소를 개설할 수있다.

공동성명이 목표로 하는 것은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가, 미·일의 건축가의 업무교류의 장애가 되므로, 최소한 미국건축가의 자격기준과 대등한 자격기준을 일본에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澤田회장은 「이 논의는 건축가의 직능론(職能論)까지 다루고 있는 바, 이것은 국익문제로서 지나친 것이다. 일본측만이 의무를 떠맡고, JIA가 국내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AIA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건축업협회의 山本설계부회회장은 「직능법만으로 제약하려는 것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국제화에도 각국마다의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의향만으로 국내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두 사람 모두 공동성명이 외압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설계관련단체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가의 제도를 개관해 보자.

미국에서의 건축가의 Profession 직능확립은 직능단체인 AIA가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에코 르뵈자르를 본받아 건축학교를 창설하고, 건축가를 식별하기 위하여 자격등록제도를 확립하고, 건축가의 수준향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으로 취득한 기능, 판단력에 덧붙여 실무관리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건축교육의 주된 장은 스튜디오이다. 학생들은 스튜디오에서 실무가인 교수로부터 실천적인 훈련을 받아, 발상능력의 개발, 건축의 기본적 본질의 기능, 지식, 판단력을 기른다. 그위에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관리기법까지 훈련과정에 포함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은 AIA 등이 참여하는 건축과정인정위원회(NCA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건축가로서의 훈련으로 부족하다. 졸업후 3년간의 인턴기간을 설계사무소에서 이수하고, 전국 동시에 행해지는 각 주의 건축가등록시험에 합격하여, 주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비로서 건축가의 이

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턴제도라는 것도, 일본에서의 실무경력은 그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 반하여, AIA와 건축가등록위원회협의회가 제정한 인턴훈련프로그램에 정해진 3년간의 커리큘럼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학습과 훈련의 뒷받침아래, 4일이상, 33시간반동안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므로서, 건축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설계활동을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앞으로 JIA와 AIA 간에 건축가의 자격, 건축학과의 커리큘럼, 인턴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검토가 있을 모양이다. 실무를 중시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비교하여, 그 실천적 레벨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간다면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관념적 직능론으로 시종하여 일상실무와 관계 없는 의론에만 급급하던 JIA로서는 180도의 방향전환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와 같이, 외부단체들로부터의 일본의 특이성, 고유문화론에 따른 이견이 있다 하여도, 국제사회로부터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堺屋太一씨가 말한 소화(昭和) 60년체제, 즉 관료지도형협조체제에서 벗어나고 문화특수국이란 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JIA가 JIA의 틀에 연연하지 않고, 건축설계계 전반의 합의아래 건축가의 자주독립에 따른 건축직능을 정의하여 그 실천과 실적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대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건축가의 개발과, 그의 유지향상에 공헌함을 운동방침으로 한다면 이러한 방향전환이야말로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다.

설계관련단체의 반성과 각오

최근 해외에서 설계경험을 쌓고 귀국한 뒤 Free-Architect로 활약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의 작업을 통하여 건축가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독불장군(一匹狼·Lone Wolf)으로 이를 악물고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설계관련 단체에는 정보원(情報源)으로서 회비는 내고 있지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은 시간낭비 같아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설계관련단체들의 활동은 저회들끼리 서로 상처를 핥는 식의, 실제로는 성과없는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국내최대의 설계사무소의 사장이 최근 잡지 「신건축」에서 「건축가라는 것은 정치·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에 대하여, 옳바른 의견을 제안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시공분리문제는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직접적이고 순수한 방법이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이 옳지 않다는 지, 분리되어야 한다는 등등, 건축가의 직능을 바로 알리려는 목소리도 설계관련단체들끼리 내부에서 짚는 소리라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한편으론 많은 설계사무소가 제네컨의 하청회사로 착각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가 개인의 자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 건축가와 거대조직사무소의 사장이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런지 모르나, 모두가 오늘날 설계관련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이말은 결코 단체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의 성과없는 행동의 책임에는 입을 다물고, 겉으로만 건축가상과 직능의 확립을 논해오던 건축가들은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사회의 요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또한 몇몇 단체들처럼 과거의 굴레나 독자성에 얽매어 본질을 잊은 채 서로의 발목을 잡아 다니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로부터 경시를 받을 지언정,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우선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려 일자체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건축가의 원점인 것과 동시에, 결만 번드르한 윤리규정이 아니라, 철저한 실천을 제일주의로 하는 것이 관련단체의 활동의 원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관련단체란 이름아래 하나가 되어 사태에 임하는 것이 그 발언력, 행동력에서 좋은 효과를 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건축설계자도 의식개혁이 필요

앞서 영국왕실건축가협회(RIBA)의 「Pro-

fession의 전략연구」-Phase2- 에서 고객과 건축가 사이의 인식에 커다란 갭이 있고 이 틈을 메우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건축가의 지위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건축설계자에게는 자신이 사회와 고객을 위하여 충분한 공헌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RIBA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회나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건축전문지 등에서도 이미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건축가도 고객과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의식개혁을 하는 일이 21세기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한다.

특히 공사비, 공정에 관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 분야는 전후 설계자가 방기(放棄)해 왔던 분야라고까지 극언하여도 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나 공사비에 대하여는 진정한 의미의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해온 설계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건축공사비는 복잡한 유통과정이나 관습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투명한 공사금액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네컨 위주의 상거래관행에 따라, 하청업자는 소위 울며 겨자먹기로, 주체적으로 코스트(Cost)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위에 최근에는 재료·시공일식의 계약방식이 늘어나 발주자나 설계자에게는 정확한 코스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미에서는 하청업자의 실제 코스트나 부담해야할 리스크(Risk) 등이 발주자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관습(Open-Book)이 있을 뿐 아니라, 가격결정권도 하청업자가 쥐고 있다. 이와같이 공사비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만 건설관행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